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68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
발 의 자 : 이병도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혜련, 봉양순, 김기덕, 김제리,
오한아, 김경영, 권수정, 김화숙,
김정태, 김소양, 이영실, 한기영,
권순선, 김종무, 김동식 의원
(15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위·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음.
-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·수탁기관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승계 규정을 신설함.(안 제6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고용승계)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6조의2(고용승계) 시장은 사회 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